

고성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775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. 11. 28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2. 11. 30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2. 12. 17

산업건설위원회 상정·의결

2. 개정사유

-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의 전문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와 부합되지 않은 일부조항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가. 수방단의 조직(안 제4조)

나. 단장(안 제5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(수방단의 설치·운영)의 규정에 의거 제정·시행해 오던 우리군 수방단운영조례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
- 수방단 조직의 구성원과 수방단 단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2002. 12. 1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